

소비자를 위한 제조물책임(PL)법의 개관

글 · 하태웅 변호사 법무법인 유·리

제조물책임법, 피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국내외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스 폭발, 화재 발생, 비행기 추락사고, 자동차 급발진, 불량 식품, 환경오염, 광해, 생태계 파괴 등 우리의 소비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재해와 사고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귀중한 생명까지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다.

21세기에 들어와 대량생산과 소비자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비자는 제품의 제조공정이나 성분이나 성능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여 소송수행 및 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반영한 제도로써 결함 있는 제조물로부터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유럽 등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이르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입법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잠잠하다가 다시 1990년 들어와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러 소비자단체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드디어 1994년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방향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만사지탄이 있지만 1998년 정부는 법안을 마련해서 1999년 7월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법안은 위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해 같은 해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기업체의 대비가 필요함을 고려해서 장장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드디어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피해소비자 제품의 결함존재와 이로 인한 피해만 입증하면 배상가능

제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로서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러한 고충을 심분 고려한 법이 바로 제조물책임법이다. 제조물책임(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민법 제750조와는 달리,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결함의 존재와 피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 손해의 발생 사실 그리고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쉽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업에게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제조물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곧 소비생활의 수준을 한차원 높이고 동시에 일반대중의 행복도를 제고하게 된다.

거의 모든 제조물이 법적용 대상

제조물책임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게 된다. 그리고 제조업자의 책임대상이 되는 제조물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조물이 포함된다. 동산이나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등을 빼면 거의 모든 제조물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크게 보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 대상인데, 이를테면 공산품 등과 같은 동산,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부품 등과 같은 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그리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창호 같은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이 PL법의 대상이 된다. 다만, 아파트·빌딩·교량 등의 부동산이나 제조나 가공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 등의 1차상품은 PL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배상책임주체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은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의 유형으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을 예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조상의 결함으로서는 이물질 혼입이나 조립불량이 있고, 설계상의 결함에는 녹즙기 사건과 같은 안전설계 미비가 대표적이다. 또 표시상의 결함은 취급설명서의 설명부족이나 부적절한 경고라벨과 같은 것이고,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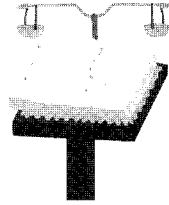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foreseeable) 안전성(safety)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지칭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가 중요하다. 우선 제조업자가 책임이 있다. 또 원재료나 부품 및 완성품 제조업자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와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이른바 수입업자가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발생시 그 책임은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지며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자나 유통업자도 책임을 진다. 즉 제조업자가 불명일 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나 대여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도 책임을 진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신체나 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는 물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든 손해에 대해 피해소비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가 결함 있는 제조물 자체에만 그친 경우, 예컨대 TV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른 제품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다친 사람도 없이 TV만 타버린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하자담보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등 기존의 민사책임법리에 따라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면책의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손해의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한 면책의 경우로는, 첫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즉 제조업자가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제조물이 유통돼 사고가 발생한 경우일 것이다. 둘째,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으로서는 도저히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이는 제조업자에게 신제품 개발로 인한 위



힘을 부담시키는 경우에 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저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한 조항이다. 셋째, 결함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이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고려한 면책조항이다. 넷째, 결함이 원재료나 부품 제조업자가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나 지시에 따라서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는 원재료나 부품 공급업자에 대한 정책적 보호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사유가 인정되어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때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리콜을 시행해 사후에 제조물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조업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내에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또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체에 누적돼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조물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제조물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의 본래의 정신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동시에 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용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항상 안전성을 확인하며 제조물을 순리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더라도 분에 넘치는 기대나 턱없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에 소비자도 다 같이 동참해서 건전한 소비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지나친 부주의로 인한 터무니없는 오용이나 남용까지도 제조물책임법이 보호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발생시 피해소비자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증거물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결함 제조물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 증거물 및 증빙자료가 확보되면 이에 대한 분석과 입증에 필요하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증거물 및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즉시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상담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를 받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관련자료의 검토 및 분석, 사실조사와 확인, 증거확보, 피해액의 산정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객관화·수량화하고 사건 담당직원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권고한다. 합의권고 절차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그 기간내에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인 분쟁조정절차를 밟게 된다.

분쟁조정은 보다 공정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것은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같이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조정결정을 내린다. 다만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접수만 받는다. 사업자와 사업자간 손해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보상기구나 민사법원을 이용하여야 한다.